농림축산식품부	보도 설명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5. 1. 6.(월) 배포 시 배포 2024. 1. 6.(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는 정상 운영 중이며, 정부는 관련기업, 소비자와 소통을 강화해 가겠음

<보도 주요내용>

1월 6일 국민일보 「헛도는 ‘고령친화우수식품제’ 홍보미흡·고액수수료… 기업들 냉담」 기사에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현황, 제품 한 건당 176만원의 수수료가 과도, 인지가 약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① 고령친화우수식품의 2024년 신규 지정건수는 51건, 총 지정건수 227건입니다.

정부(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는 **고령친화산업의 범위**를 의료용품, 일상용품에서 **식품까지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를 도입·운영하는 등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복지부) 일부개정 및 고시제정(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대상 식품 품목)(’21.3.9)

고령친화우수식품 제도를 도입한 2021년에 9개 기업이 지정을 신청한 이후 매년 20~22개 수준의 기업이 즉석 식품류, 과자·떡·빵류, 농산가공식품 등에 대해 지정을 신청하여 총 227건 대상으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초반인 2022년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50~60건의 지정 건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② 제품 한 건당 수수료가 176만원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수수료가 아니라 사용성평가 비용이며, 농식품부에서는 그 비용의 80% 수준을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보건복지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품질·안전뿐만 아니라 편의성·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식품 분야에서도 이를 검증하기 위해 고령자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사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176만원은 해당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농식품부는 우수식품 지정 후 평가비용의 80% 수준(VAT 제외)을 환급하는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므로 기업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고령친화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실증사업, 교육 및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도시와 농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고령자 110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사업,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소비자단체를 통한 찾아가는 고령친화식품 교육,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단 운영, 온라인 판로개척, 농협하나로마트 팝업스토어 운영 등의 홍보 사업 추진 중

고령친화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식품부는 규제 발굴·개선 등 정책 기반 조성, 맞춤형 컨설팅과 박람회 지원 등 기업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고령자 527명 대상 실증사업과 홍보·교육 등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기업 등과 협업하여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비자가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생산·제공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과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및 우수제품 현황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실 그린바이오산업팀	책임자	과 장	김기연 (044-201-2131)
		담당자	사무관	황서연 (044-201-21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및 우수제품 현황**

□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현황('21 ~ '24년) : 48개사 227개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제도】

- **(배경)** 고령친화우수제품 범위 확대: 의료용품, 주거설비용품, 일상생활용품 → **식품까지 포함**(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시행, '21.3.9.)
- **(목적)** 고령자의 섭취, 영양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지정
- **(요건)** ①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가 생산
  ②「건강기능식품에관한 법률」에 따라 품목제조신고가 완료된 제품
  ③품질·안전 측면 및 ④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 요소 심사
- **(고령친화우수식품 표시도형)**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섭취가능	치아 섭취 가능	잇몸 섭취 가능	혀로 섭취 가능
표시도형	고령친화우수식품 치아섭취	고령친화우수식품 잇몸섭취	고령친화우수식품 혀로섭취

○ 지정기업 유형(총 48개 기업)

대기업 6개社	중견기업 5개社	중소기업 37개社
54제품	35제품	138제품

* 대기업: 현대그린푸드, 신세계푸드, 하림식품, ㈜송림에프에스(CJ 계열사), 아워홈
** 중견기업: 푸드머스(풀무원), 아하식품, 풀무원식품(주), 서울우유 협동조합, 오뚜기

○ 규격단계 및 섭취 유형별 현황

구분		규격단계			섭취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반찬류	죽류	국탕 찌개류	기타*
합 계	227	125	13	89	122	61	6	38

* 기타유형: 간식류(과자류, 빵류, 떡류, 그래놀라, 참마밀 등), 퓨레, 진밥, 치즈 등 포함

○ 식품유형 현황(식품공전)

유형	즉석 식품류	농산 가공 식품	수산 가공 식품	식육 가공및 포장육	알가 공식 품류	과자, 떡 빵류	절임, 조림류	조미 식품류	유가 공품류	특수 의료 용도	특수 영양	음료류
제품수	106	29	4	46	13	12	7	5	1	1	1	2

○ 연도별 지정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기업 수	48	9	22	20	22
제품 수	227	27	87	62	51